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종군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용자 모집 방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1-5 등급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러그와 홍보지, 센터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1조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 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 수발 수고와 부담을 줄여 수발자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의해 선택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 되면 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별 제공시간 및 한도금액은 <<별표 >>와 같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고시내용 첨부)

● 월 이용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되어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이고 개인 부담금이15 %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비로 전액 본인 부담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전액 본인부담한다.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1. 등급이 변경되어 서비스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가 상향에 따라 기존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상 승인된 월 이용금액을 초과함으로 서비스이용을 유 지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변경신청할 수 있다.

나. 입소이용변경 신청 승인 전까지는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에 승인된 급여종류별 월 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이용이 가능하다.

다. 수급자와 급여계약시 급여종류별 제공시간 및 급여비용을 명시하였다면 고시내용에 따라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5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가. 방문요양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3.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신체기능유지 증진을 위한 신체기능운동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치매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 연속적 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한다. 기 존의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다.

※ 방문목욕급여라 함은 요양보호사 2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장 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이다.

※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준하며, 필요시 직무 상 이와 유사한 다양한 사업을 병행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자,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신원 인수 인 (보호자 혹은 보증인)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 및 소개, 급여제공 직원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센터장(관리자)과 동 행하여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2)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계획된 동일한 수준의 급여의 양과 수준이 지 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퇴직, 휴직, 순환근무, 10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며, 업무인수인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이 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내용은 수급자의 질병 관련 정보, 급여제공 내용, 응급상황대 응법 및 비상연락망, 각종 유의사항 등과 업무인수인계일자 등을 기록하고 인수인 계자가 상호 서명한다.

4)대상자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단, 병원입원 시는 제공하지 않는다)

5)대상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제외)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대상자(신원인수인) 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기관에서 받게되는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행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 장 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2).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 무 ④ 센터의 직원에 대한 존중과 센터(직원포함)의 제안을 거부핼을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⑥ 대상자 어르신의 병원 입원시 즉시 통보 의무등이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대상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불투명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혹은 보 증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 을 한다.
3.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별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14,120	150분	41,730
60분	21,690	180분	46,130
90분	29,080	210분	50,190
120분	36,720	240분	53,94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